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1. 30 선고 2019가단1022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전 문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헤명

담당변호사 손정혜

피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팩스

담당변호사 김연수

변론 종결2022. 11. 2.

판결 선고2022. 11. 30.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968,080,000분의 24,538,713 지분, 원고 B에게 968,080,000분의 24,538,713 지분에 관하여 각 2019. 10. 24.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 중 각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6,411,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9. 8. 17. 사망하였는데, 법정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다.

나. 망인은 사망하기 직전인 2019. 8.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같은 달 14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망인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968,080,000원이다.

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한 'E'의 영업권 가치는 59,500,000원이다. 망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면서 'E'의 영업에 관한 권리도 모두 피고에게 이전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9. 11. 13.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 이 신고는 2020. 1. 13.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 G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은 아래의 계산방법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의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부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1) 적극적 상속재산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H은행 예금채권	32,361,218	을 제5호증
I보험 해지환급금	3,078,546	을 제6호증의 1
J보험 해지환급금	3,422,107	을 제7호증의 1
K조합 예금	1,674,790	을 제11호증
L조합 예금	154,644	을 제11호증
M조합 예금	6,214,103	을 제11호증
자동차	5,000,000	을 제11호증
N은행 예금	9,679,519	이 법원의 N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합계	61,584,927	

2) 증여액 가)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되는데(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는 그 적용이 배제되고, 이에 따라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횡집의 영업권을 증여하였는데, 이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모두 합산하면 1,027,580,000원(= 968,080,000원 + 59,500,000원)이다.

다) 원고는 망인이 피고에게 2014년경부터 현금 241,793,902원을 증여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새로 '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식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E'의 매출채권 중

일부를 나누어 497,039,098원 상당을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료를 망인에게 따로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O'을 운영하면서 그 차임 173,761,935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망인은 배우자인 피고와 함께 'E'을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식당 운영경비 등을 망인의 계좌뿐만 아니라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피고의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부기간인 망인과 피고가 식당을 함께 운영하면서 식당의 운영경비나 생활비 등으로 수많은 자금이 서로 간에 오고간 것으로 보이는 점, 'O'은 사실상 'E'과 동일한 식당으로 사업자등록만 따로 하여 둔 채 망인과 피고가 사실상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속채무액 상속채무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 표에서 인정하는 부분과 배치되는 당사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M조합 대출채무	505,000,000	갑 제5호증 이 법원의 M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P에 대한 차용금채무	20,000,000	이 법원의 P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Q에 대한 차용금채무	300,000,000	을 제15호증 이 법원의 Q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R 대출채무	10,513,078	을 제12호증
S에 대한 차용금채무	31,880,858	다툼 없는 사실
T에 대한 차용금채무	50,000,000	을 제20호증, 을 제25호증
합계	917,393,936	

4) 가액의 계산 결국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은 171,770,991원(= 적극적 상속재산 61,584,927원 + 증여액 1,027,580,000원 - 상속채무액 917,393,936원)이 된다.

다.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1) 원고들은 망인의 직계비속으로 그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유류분 비율(B)는 7분의 1이고, 원고들이 얻은 특별수익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도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2) 원고들의 순상속분액(D)은 아래와 같은 계산 결과 -231,320,090원이 되나, 원고들이 상속한정승인을 한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유류분 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 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즉 순상속분이 음수인 경우라도 유류분 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참조).

망인의 상속재산이 61,584,927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공동상속인인 피고에 대한 증여액을 모두 합산하면 간주상속재산은 1,089,164,927원이므로,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액은 311,189,979원($= 1,089,164,927\text{원} \times 2/7$, 원 미만 버림), 피고의 법정상속분액은 466,784,968원($= 1,089,164,927\text{원} \times 3/7$)이 된다. 그런데 피고는 560,795,032원($= 1,027,580,000\text{원} - 466,784,968\text{원}$)의 초과특별수익을 얻었으므로 상속에서 제외되고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재산 61,584,927원을 균분하여 30,792,463원($= 61,584,927\text{원} \times 1/2$)씩 상속하게 된다(피고의 초과특별수익을 균분한 280,397,516원씩을 원고들의 구체적 상속분액인 311,189,979원에서 공제한 금액과 동일하다). 한편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된 상속채무 917,393,936원은 원고, 피고 등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의 상속채무 부담액은 262,112,553원($= 917,393,936\text{원} \times 2/7$)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순상속분액은 -231,320,090원($= 30,792,463\text{원} - 262,112,553\text{원}$)이다.

3) 결국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각 24,538,713원[$= 40,774,986\text{원}\{= 171,770,991\text{원}(A) \times 1/7(B)\} - 0\text{원}(C) - 0\text{원}(D)$]이다.

라. 유류분 반환의 방법 및 범위

1)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 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 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 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 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부동산의 지분이 많지 않다는 사정은 원물 반환을 명함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가액 반환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물 반환을 명하기로 한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각 24,538,713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은 968,080,000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물 반환의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이전하여야 할 지분 비율은 각 968,080,000분의 24,538,713 지분이다.

마.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968,080,000분의 24,538,713 지분, 원고 B에게 968,080,000분의 24,538,713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9. 10. 24.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유류분의 반환 방법으로서 원물 반환을 주위적으로 구하고, 원물 반환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가액 반환을 예비적으로 구하고 있는데, 이는 원물 반환의 방법이 채택되어 주위적 청구가 일부라도 인용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예비적 청구의 심판을 구하는 취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본 살펴본 바와 같이 원물 반환의 방법을 채택하여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상속채무 중 일부를 피고가 변제하였다고 하면서 그중 원고들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므로 이 채권으로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계는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는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의무인 반면 피고가 상계할 것을 주장하는 원고들의 채무는 금전지급의무로서 채무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원고들의 채무와 피고의 채무는 상계적상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동혁

별지